

#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안번호	131
------	-----

제출년월일 : 2004. 11.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 규정에 의해 각각 적립·운용되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정과 아울러 시행령(5.29), 시행규칙(6.12)의 제정시행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및시행령의 위임사항과 그 필요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 2. 주요골자

- 가.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을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 한다. (안 제3조)
- 나. 당해연도 재난관리기금사용 후 익년도 법정적립 이전에 추가 사용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를 우선 확보토록 하며, 불가피할 경우에 한하여 익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추가 확보토록 한다.(안 제6조)
- 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및 물자 구입
  5. 기타 군수가 재난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 제7조)

- 라.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과 관련하여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의 용자에 관하여 정함. (안 제8조)
- 마.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3.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평창군 소속 실·과장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안 제11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불 임
- 나. 예산 조치 : 2005년도 당초예산 반영
- 다.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 라. 입 법 예 고 : 2004-444호(2004.11.6)
- 마. 기            타 : 행자부 표준안

##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평창군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제135조 및 은행법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5조(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추가적립)** 제3조에 의한 당해연도 기금사용 후 익년도 법정적립 이전에 추가사용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를 우선 확보토록 하며, 불가피할 경우에 한하여 익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추가 확보토록 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물자 구입
5. 기타 군수가 재난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지방재정법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평창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관 계 법 령 발 취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2004.3.11. 법률 제7188호

**제40조(대피명령)** ①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이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41조 내지 제43조 및 제45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지역안의 주민이나 당해 지역안에 있는 자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피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2조(강제대피조치)**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지역 또는 위험구역안의 주민이나 당해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에 있는 자를 강제대피시키거나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①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①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 2004.5.29. 대통령 제18407호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①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3.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것에 한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4.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5. 재난원인분석 및 침수흔적조사, 침수흔적도 작성·보존 등의 사업
6. 법제40조 내지 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7.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

②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용자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 2004.6.12. 행정자치부령 제233호

**제20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제1항제7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2.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3. 농업생산기반시설중 배수장, 보, 용수로, 배수로 및 방조제의 정비사업
4. 영 제3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정비사업
5.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사업
6.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7.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8.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대책사업

## □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등)** ①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제115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고, 그외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시도(시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표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시·도 및 시·군·구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5조(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 자치단체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용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용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용자기금 규모와 용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밖에 기금의 용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국장(국직제가 없는 자치단체는 재난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장(국직제가 없는 자치단체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도, 시·군·구)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과 ○○담당(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도, 시·군·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조례는 이를 폐지한다.